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차
10	5	1983. 2. 24	중재 하 경 기

의안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월" 일부개정

의결사항 1.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이월을 불입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 실시일자 : 1983. 2. 24

제외관계 법구조항 한국은행법 제72조

제외취지 금융기관 추등성 조건의 호충성을 제고하여
 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업무이월을 일부
 인상조정하는 한편 기타어음등 증권담보
 대출의 여신차금중 사실상 금융기관의 취해
 종결된 자금을 삭제하고자 본건 전의와 같이



이전할 것을 재의할

상고사항 1 재의관계 비구조형

한국은행법 제72조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제69조의 규정

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

(이 라 제 12 조)

2 정부를

가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 주에

나 한국은행 이율을 정함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일부 개정(안)

현행		행
1. 여신업무이율		
구분		이율
제한인	상업어음	연 5.0%
담보대출	(생략) 기타어음등 증권	(생략) 연 12.5%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중자 대상은 별도의 이율을 적용한다.

2. 기타어음등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특별이율 적용대상

가. 연 6.0% 적용대상

(1) ~ (3) (생략)

개정		(안)
1. 여신업무이율		
구분		이율
제한인	상업어음	연 5.0%
담보대출	(현행과 같음) 기타어음등 증권	(현행과 같음) 정반월 금융기관 「월」 거래평준율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부터는 폐지버림) 에 1% 「포인트」를 가산한 이율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중자 대상은 별도의 이율을 적용한다.

2. 기타어음등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특별이율 적용대상

가. 연 6.0% 적용대상

(1) ~ (3) (생략)

구분	행
나. <u>선 7.0%</u> 적용대상	
(1)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2) 정부로 부터 현물 출자를 받은 중화학 공업 관련 비상장 지주권 주식 보유에 따른 유상 증자 불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3) 언론기관의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와 관련한 언론기관 통폐합에 따른 금융지원을 위한 대출	
(4) 외화표시 채무 상환자금 (환차) 지원을 위한 대출	
(5) 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한 대출	
(6) 지방자치단체 여신지원을 위한 대출	

구분	정 (인)
나. <u>선 8.0%</u> 적용대상	
(1) (현행과 같음)	
(삭 제)	
(")	
(")	
(")	
(2) 정부의 정책사업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여신 지원을 위한 대출	

현행	개정 (안)
(7)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금지원에 위한 대출 다 연 5.0% 적용 예정 (생략) 3.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대출 연 5.0%	(7)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금지원에 위한 대출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